

발신번호 변경 신청서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F A X	
주 소			

변경할 발신번호
(CID)

MS
Mobile Service and Communications

(이용약관 필수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계획)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회롱 등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작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의 전화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서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에게 대한 자료의 열람, 제출을 요청 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5. 자료의 열람, 제출,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 조 64 조 2 및 제 69 조를 준용한다.

※ 제출서류 : 통신사 가입사실증명원, 개인신분증사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일 201 년 월 일

가입자명 (서명)

주식회사 엠에스정보 귀중

